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53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 등 ...	2

I. 개요

1.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5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30.

(3) 회 부 일 : 2025.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장기요양요원의 이직률을 높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⑦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제36조의2(시정명령) ----- ----- ----- -----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 ----- --. 1. 2. (현행과 같음) <u>3. 제35조의6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u>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조제6항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²⁾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의2제1항³⁾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 제38조⁴⁾는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

-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⁵⁾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임.

-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연간 인건비를 기관이 지급받은 연간 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⁶⁾ 따라서 공단은 매월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급여유형별 정해진 장기요양급여수가를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연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1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5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8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6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1

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위반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위반 행위로서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지정 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⁷⁾

□ 이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만족도는 임금수준, 고용안정성을 비롯하여 대부분 항목에서 2019년 대비 감소하였고, 지난 1년간 이직경험에 대하여 11.4%가 이직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2019년의 8%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지난 1년간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비난·고함·욕설, 신체적 부당행위, 성적 부당행위 또는 업무적 부당행위를 경험하였다고 한 응답자는 4,302명 중 1,007명에 이르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보임.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 참고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은 월 평균 임금이 127.1만원으로 나타났고⁸⁾,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순위는 임금수준 향상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만족도 >

〈표 7-13〉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만족도(매우만족+만족)

(단위: %)

특성	2022년(A)	2019년(B)	변화(A-B)
임금수준	28.5	35.5	-7
근무시간	46.6	51.0	-4.4
근무유형	59.6	-	-
업무 내용	50.0	58.1	-8.1
업무 강도	40.8	41.4	-0.6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	25.0	22.9	2.1
고용안정성	43.6	51.2	-7.6
종사자 복지후생 수준	35.3	-	-
직장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	49.5	62.4	-12.9
장기요양기관 및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36.4	41.2	-4.8
업무 전반 만족도	46.2	54.4	-8.2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의 마련 및 그 준수를 도모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먼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대책 마련 책무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제4조제6항⁹⁾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노력 의무를 기 규정하고 있음.

8) 동 실태조사에 따를 때 월평균 근무시간은 106시간으로 나타남.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종사자 근무기간에 따른 월 6~10만원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17.10.~),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매뉴얼 배포,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명찰형 녹음기 보급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설명임.

□ 다음,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국가가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¹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적계약 및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¹¹⁾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 대책 마련 의무 신설(안 제4조제7항)과 관련하여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6항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적극 노력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환경 개선은 처우 개선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의 경우,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급여비용을 기관에게 지급하며,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인건비 기준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과 장기요양요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기관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출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하여 제6항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실익이 없고,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준수와 관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상 근로자로서 이미 일정 부분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임금은 근로자인 장기요양요원과 사용자인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바, 법률으로써 적정 인건비 기준을 규율하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노인복지 증진과 안전한 돌봄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처우로 인해 인력 이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근로자 처우개선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개정안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의함. 다만, 개정안의 ‘장기요양요원’은 법 시행령 제11조¹²⁾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일부 직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간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인력’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법 제31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23조제2항¹³⁾에 따라 의무 배치하여야 하는 모든 직종의 종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에 맞추어 현재 급여비용(수가) 산정 구조의 변화와 필요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명시 없이 준수 의무를 장기요양기관에만 부여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반하는 사항으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즉, 인건비 기준 준수에 대한 책임을 장기요양기관에만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필요한 예산 마련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장기요양 수가가 전혀 현실에 맞게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현장에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503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